

## 기획연재

유사언론행위  
이대로는  
안 된다

>> 글 김병희 한국PR학회 회장,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kimthomas@hanmail.net

# 알리지 않을 권리와 정당한 관심사의 균형점



K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창'의 부동산 추적보도 시리즈는 언론의 '알릴 권리'와 공인의 '알리지 않을 권리'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제기한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은 <회장님의 미국 땅>(1편:2014.6.24), <회장님의 수상한 법인>(2편:7.1), <회장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3편:10.7) 같은 시리즈로 세 차례 방영되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 자체는 'PD 저널리즘의 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맹목적인 인기몰이 정서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 첫째, 공인의 '알리지 않을 권리'의 존중 문제다.

언론의 알릴 권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일 때는 공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알릴 권리'가 중요하듯이, 공인의 '알리지 않을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비밀주의 경향에 대해 언론인이 전개한 언론운동 과정에서 태동된 '알권리'(Right to know) 개념에서는 정보를 입수할 권리를 가장 강조했다. 정보를 입수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현대 언론법에서는 사생활과 관련하여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을 개인의 의지에 따라 알리지 않을 권리(隱私權, Right to privacy), 다시 말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강조하는 성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미국의 언론법과 저널리즘 윤리에서도 언론이 취재·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헌법상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다. 즉, '알리지 않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취재에 응하지 않는 관계자들을 집요하게 쫓아가며 인터뷰를 시도하거나, 심지어 회장 댁 담장 밖에서 기자가 고함을 질러대는 장면도 있다. 프라이버시권에는 자신에게 관련되는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은 공인의 '알리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 둘째, 시청자의 '정당한 관심사'의 범위 문제다.

시청자의 '정당한 관심사'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요건으로 저널리즘에서 자주 인용되는 논거이다. 우리 정부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한 상황에서, 대기업 회장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한 부동산을 표적 보도하는 것이 시청자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되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시청자의 정당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한데, 이번 탐사보도 내용을 보면, 주요 기업인 1,825명의 부동산을 6개월에 걸쳐 조사했다고 하면서도 대기업 6개사만 집중 보도하고, 심지어 합법적인 부동산 구매까지 문제투성이로 보도했다. 더욱이 "죄의식 전혀 없습니다"같은 한 개인의 인터뷰 내용이나 "회장의 평생소원은 미국 집 한 채"라는 자막을 두드러지게 부



각시키며 반재벌 정서를 부추기는 측면도 강하다.

불법적인 부동산 구매는 당연히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불법적인 탈법적인 부동산 구매의 문제에만 집중해야 했으며, 불법과 합법의 구분을 명백히 구분해 보도했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의 여부가 있는 부분은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해외 부동산 구매가 시청자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된다는 점을 방송의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방송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이 없어 전형적인 반재벌 기획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회장님의 미국 땅>이라는 매우 선정적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공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 이처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보다 '호기심을 부추기는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셋째, 방송 내용의 편향성 여부 문제다.

<회장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는 부동산 추적 보고서 시리즈의 3편이었지만, 방송 내용에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없고 주로 자녀교육 문제를 집중 추적했다. 기업인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입학 문제, 재벌 그룹의 미국 대학교 기부 문제, 미국 국적과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해외 국적 취득으로 인한 병역 면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공영방송에서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 해외 유학 같은 문제를 왜 기업인 대상으로만 하는지 의문시된다. 이런 문제는 정계, 언론계, 학계, 공직자 등 우리사회의 지도층 전체에 만연한 현상이다.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지 않는가? 특히 '자녀 교육'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마치 기업가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양 방송한 것은 편향적인 보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헌법 규정의 핵심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다. 거의 미성년자인 CEO 자녀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노출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미 종결된 기업인에 대한 사건을 재탕해 보도한 내용도 많아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비록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도 뉴스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때 정당화가 성립되는 기준은 보도 내용이 공공 이익에 우선하는지의 여부인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공공 이익에 우선하는지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기준은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도 재벌 가족들이 잘 살 것이라는 개연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은 반재벌 정서를 부추길 수는 있어도, 방송 내용이 편향되었다는 평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최근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책임 묻는 판결 늘어

비록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도 뉴스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보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정당화가 성립되는 기준은 보도 내용이 공공 이익에 우선하는지의 여부다.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 이익보다 우선하는지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기준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동안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보도의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선정적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언론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우회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타협해 왔다.

그동안 법원은 명예훼손이나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공익성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판결이 점점 늘고 있다. 더욱이 제작진이 제3자의 입장에서 취재해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먼저 결론을 확신하고 이에 꿰맞춰 현상을 수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보도하는 경우를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판하기도 한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양식도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언론에서는 '알릴 권리'와 공인의 '알리지 않을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킹센터에서도 일찍이 '알 권리, 알릴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세 가지 권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공론장(public sphere)에서는 시청자의 '정당한 관심사'의 범위나 방송 내용의 편향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K A A**